

도로표지 제작·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

도로표지 제작·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고속국도 관광지표지 표지번호 명기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고속국도용 관광지표지의 번호를 제17조에도 명기 추가(표지번호 438-1~12)
- 나. ‘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’의 관광지표지 설치 대상 추가(별표 18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로표지 제작·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

도로표지 제작·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7항 중 “관광지표지”를 “관광지표지(표지번호 438-1~12)”로 한다.

제43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3년 7월 1일”로,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[별표 18]

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 (제17조제2항 관련)

관광지의 종류	도로별 구분	
	고속국도 외	고속 국도
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	○	
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	○	○
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	○	
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	○	○
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, 군립공원	○	
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	○	
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	○	○
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	○	○
관광진흥법에 의한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	○	○

주) 2017.12.31. 이전 고속국도에서 안내지명으로 사용되어 온 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등은 운전자의 혼란방지, 유발교통량,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계속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내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예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관광지표지의 설치 등) ①~⑥ (생략) ⑦ 고속국도의 경우 해당 인터체인지(IC) 출구의 1.5km 전방에 겹기둥식 또는 편지식으로 <u>관광지표지</u>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이 때 관광지명과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.</p> <p>제4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<u>2022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</p>	<p>제17조(관광지표지의 설치 등) ①~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<u>관광지표지(표지번호 438-1~12)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7월 1일</u> ----- ----- <u>6월 30일</u>----- ----- ----- ---</p>